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검찰, 피의사실공표 ·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김승규 전 원장 "일심회는 간첩단 사건" 인터뷰

지난해 '일심회'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은)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고 밝혔다가 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희관)는 4일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 전 국정원장을 지난달 31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원장이 일심회 사건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 '간첩단 사건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터뷰 당시 일심회 사건은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 전 원장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나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상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달 13일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간첩단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장관 등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김 전 원장을 봐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심회 사건 가족대책위 문치웅 간사는 "김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도 계속 미루다가 서면조사만 한 상태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기영 씨의 부인 김 아무개 씨 등이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김 씨의 과거 전력 등 최 씨의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적인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최 씨와 김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 2008년 1월 4일

"언론사 경영진-편집국장 다툼은 공적 사안"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박재필 부장판사)는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편집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21 편집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진과 편집실무자인 편집국장의 다툼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고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 시사저널 편집인이 삼성그룹 관계자로부터 기사 게재를 재고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기사를 보지도 않고 편집국장을 불러 기사 보류를 권고한 점 ▲ 기사보류를 권고할 때 자신과 삼성의 관계를 강조한 점 ▲ 편집인이 삼성 고위층 인사들과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편집인이 삼성 고위층과 친분 때문에 기사를 삭제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21은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라는 제하의 2006년 7월 4일자 칼럼에서 "시사저널 사장은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의 인사 문제를 비평하는 기사를 인쇄기가 돌아가기 직전 편집국장 몰래 광고로 대체하는 등 편집 책임자를 '왕따'시키고 언론을 탄압했다"고 썼다.

시사저널은 이에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성 칼럼을 썼다며 한겨레21 편집장을 고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한겨레21 편집장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원심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2007년 11월 18일

학사모, '기부금 요구' 보도 손배소 패소

시민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기부금 요구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교복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3일 학사모가 문화일보와 아이비클럽 등 교복업체 3곳을 상대로 낸 25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문화일보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사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사용됐지만 그로 인해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됐다고 볼 수 없으며,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수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사 보도로 인한 문화일보의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복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2월 '학사모가 교복업체 3곳에 수십 억 대 사회환원기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3차례에 걸쳐 보도했고, 이에 학사모는 "교복업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허위 기사를 내보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 2008년 1월 23일

이건개 씨, 홍준표 의원 상대 '명예훼손' 서 패소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이 자신을 슬롯업계 대부인 정덕진 씨 배후세력으로 지목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과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고검장이 홍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이 적시한 내용에는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 및 기사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도 "게시물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를 위한 것인 점, 피고 홍준표의 글은 원고가 정덕진의 선처를 부탁하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당시 사건 수사에서 슬롯업계 대부인 정덕진의 진술을 기초로 문제의 사실을 적시한 사정 등에 비춰 진실성 또는 상당성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도 진실에 부합하는 점에 비춰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고검장은 홍 의원이 검사 시절 수사경험을 모아 쓴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라는 책에서 자신과 관련해 사실 아닌 내용을 적시하고, 기자들이 홍 의원의 대통령 후보 경선출마 기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자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2008년 1월 25일

"네이버는 언론매체" 서울고법

법원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오보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CBSi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네이버는 2005년 3월 노컷뉴스에서 작성해 전송한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의 기사를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에 2시간여 동안 게재해 전 의원에게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재판부는 "네이버는 유사 취재 개념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그 나름의 해석 작업을 통해 취사선택해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편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포털사이트의 면책을 허용한다면 피해자가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유용한 정정보도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NHN은 그동안 네이버에는 취재 기능이 없어 언론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해왔다. 또 온라인 뉴스의 명예훼손 시비에서 "게시만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네이버의 기사 게재 행위를 문제삼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2008년 1월 20일

국정원, 조선 X파일 소송 패소

국가정보원이 'X파일'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와 이진동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6일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 15명이 '국정원, 올 1월 도청테이프 성문분석 목소리 주인공 확인했었다'(2005년 7월 26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조선일보와 이진동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원고는 "국정원이 성문분석 전문가에게 '안기부 X파일'로 거론되고 있던 도청자료가 담긴 CD에 대한 성문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모 씨 등이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와 위 원고들 사이에 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이 사건 도청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정원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성문분석 전문가에게 맡겨 성문분석을 받아 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협회보 2008년 1월 17일

일요신문, 이해찬 전 총리에 1천만 원 배상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항소심이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3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윤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간지인 일요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내용은 윤 씨 측근으로부터 들은 뒤 다른 사람한테 확인했다는 점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지만, '윤 씨가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은 만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요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일요신문은 2006년 12월 윤 씨가 이전 총리와 자주 골프를 쳤고 총리 공관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보도했으며 이전 총리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8년 2월 13일

"월간조선 4·3사건 보도 정당" 제주지법, 명예훼손 소 기각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제주 4·3 유족 446명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4·3사건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망인(亡人)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돼야 한다"며 월간조선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제주 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무장폭도에 4·3사건 희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월간조선의 보도내용(2001년 10월호 '특종 국군지휘부의 자해행위')에는 희생자의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의 의미는 1948년 4월 3일 무장소요사태 당시 관여한 공산주의자 등으로 한정해야 하고, 4·3사건 희생자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월간조선의 보도내용은 여순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부각시킨 다큐멘터리 영화 '애기섬' 제작에 헬기 등 군 장비를 지원한 군 수뇌부를 비판한 것이고, 여순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4·3사건의 본질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4·3사건 유족회는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원 등은 2002년 3월 "월간조선의 보도가 제주 4·3 역사를 왜곡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11억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선일보 2008년 1월 11일

KBS, 참토원에 3억 원 지급
15일 참토원 "1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받았다"

KBS가 방영금지가처분결정을 위반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황토화장품 업체 ㈜참토원 쪽에 3억 원을 지난 14일 지급했다.

참토원은 15일 "법원 집행관과 함께 1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압류스티커를 부착하려 했으나 KBS로부터 3억 원을 현장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5일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편이 방영금지가처분결정을 어겼다며 KBS는 참토원에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판결 이튿날인 9일 "곧 서울남부지법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KBS 경영진은 강제집행을 앞두고 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3억 원 지급이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토원 쪽은 15일 "정식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고문변호인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참토원 쪽은 8일 판결 외에도 반론보도 직권결정에 대한 KBS 쪽 이의제기 건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건도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2008년 1월 17일

"청와대 비서관 일심회 연루 암시 보도 명예훼손"
법원, 동아일보에 손배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내가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동아일보는 박 비서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 요구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심회 사건 핵심인물인 장민호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문건에서 박 비서관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공안당국이 박 비서관을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는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 등 세간에 나돌던 풍문을 공안당국의 판단인 것처럼 기사 내용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2006년 11월 27일치 1면에 '일심회 보고서, "청 비서관 수차례 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박 비서관의 이력을 실었고, 이에 박 비서관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소송을 냈다.

한겨레 2008년 1월 1일

"'공익보도로 명예훼손' 위법 아니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진실이고 보도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병하)는 18일 전 목포시립교향악단(목포시향) 상임지휘자인 김모(49) 씨가 지역 신문사 '전남매일' 기자 강모(44) 씨와 ㈜송백, 목포시향 단원 이모(37.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 내용이나 표현이 김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강 씨와 회사가 보도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목포시 감사와 검찰의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기사의 주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보도행위가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도내용이 목포시향의 운영방식을 주로 문제 삼았고 의혹제기로 목포시의 감사가 진행된 점, 목포시향 운영의 적절성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 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 불기소 처분했으나 진정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로 확인돼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3년 12월부터 11개월여간 18차례에 걸쳐 목포시향의 공금 횡령 의혹 등을 보도했으며 이 씨는 2004년 2월께 김 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부지휘자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목포시는 김 씨를 상임지휘자 직에서 해촉했다.

연합뉴스 2007년 12월 18일

명예훼손 기사 쓴 기자에 유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7단독 문정일 판사는 31일 로비성 골프를 주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하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J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씨는 2006년 11월 이틀간 '김황식 하남시장이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골프회동을 가져 광역화장장 유치를 위한 로비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의 해명이 거짓이다' 는 등의 허위 사실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역화장장 유치에 대한 찬반논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시장이 골프를 즐긴 사실에 대한 보도는 다소 과장이 포함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시장) 측이 '골프모임을 주선하지 않았다'고 사전에 밝혔고 가명 사용에 대해 '골프클럽을 빌렸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해명했는데도 거짓해명이라고 기사를 작성한 점, '부도덕, 비양심적, 지탄받아 마땅'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단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비방할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로 보도하고 심지어 취재한 사실에 반해 기사를 쓴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최근에 전과가 없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8년 1월 31일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신문사 · 기자에 1억 배상판결

시의원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과 관련해 허위보도를 한 지방일간지 취재기자와 신문사가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 하남시 임모(40) 시의원이 지방일간지 K사와 이 신문사 기자 J씨, K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K사는 지난 2월 26일자 1면 톱기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하남시 미관지구 내에 2층짜리 자동차정비공장을 갖고 있는 임 의원이 3층에 주차장을 증축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위법하게 증축허가를 받았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하남시 도시계획조례제정이 지연된 틈을 타 불법특혜로 건물의 용도변경을 받았고, 건물의 공시지가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냈다는 내용의 기사도 실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용도변경 신청 및 허가 당시(2001년)에는 시의원도 아니었고, 조례상 미관지구 내에서는 공장용도로의 증축은 불법이지만 주차장은 예외여서 문제가 없었으며 공장 부지를 소유권 이전한 뒤 오히려 공시지가가 높아져 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허위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해당 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2007년 12월 14일

예명도용 음란사이트 "트위스트 김에게 위자료 주라"

배우 '트위스트 김'(71·김한섭 씨)이 자신의 예명을 도용한 음란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28일 'www.twistkim.com'이란 이름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유모 씨 등 4명에게 총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의 예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이용한 것은 김 씨가 음란사이트의 운영자이거나 음란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암시할 뿐 아니라 김 씨의 예명으로부터 음란사이트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김 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검색 서비스가 인격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는 했지만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방치하지는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트위스트 김'을 도메인에 포함시킨 음란사이트들이 생겨나자 연예활동에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경향신문 2007년 12월 28일

대법 "외주 제작 · 납품사 초상권 침해 때 방송사도 손배책임 있다"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 · 납품하는 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모 군(3)과 어머니 오모 씨(33)가 "초상권을 침해한 외주 프로그램 제작업체와 방송사가 공동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S와 '병원24시' 담당 PD, 외주업체 J사와 담당직원 등이 연대해 김 군과 오 씨에게 7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군은 2005년 8월 대학병원에서 태어나 9월 말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J사는 '미숙아'들을 취재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김 군이 잠든 모습과 어머니 오 씨가 젖병을 물린 장면 등을 함께 찍어 전국에 방영했다. 김 군의 부모는 "아들을 미숙아로 오인시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J사에만 책임을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KBS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제신문 2008년 1월 23일

동영상 취재 '경계경보' 서울신문 1천여만 원 손배 판결

앞으로 기자들은 동영상 취재 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지난달 9일 A씨 등 3명이 서울신문과 B기자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천 1백만 원 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문제는 지난해 5월 17일자 '현장습격 고시촌 식당 왜 싼가 했더니…' (8면)란 제하의 기사에 들어간 동영상에 식당 종업원의 얼굴이 수초 간 노출, 식당 주인 등 3명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초상권 등 인격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동영상 취재에 있어선 이에 대한 훈련과 주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텍스트로 된 기사의 경우 취재기자 본인이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스크를 통해 걸러지지만 동영상은 관련 교육이나 데스크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재기자들에게 관련 교육과 함께 동영상 취재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12일 항소심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인격권 등에 대한 사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자협회보 2008년 2월 14일

대법 "한겨레 '언론권력' 시리즈 진실에 부합"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한겨레〉의 2001년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사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6년 넘게 이어진 소송은 동아일보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민사14부가 2005년 11월 판결한 항소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전제한 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겨레〉의 보도 및 만평은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적 ·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며 "특히 언론사가 비판자로서 자유를 누리는 만큼 언론사에 대한 비판의 범위도 넓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01년 3월 6일치부터 모두 25차례에 걸쳐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거대언론들의 언론권력적 행태를 파헤치는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 2008년 2월 15일